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9. 2.
행정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5. 8. 14.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2025. 8. 18.
- 다. 상정일자: 제278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2025. 9. 2.)
상정, 심사,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고용협력과장 양경수】

가. 제안이유

-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기존의 일괄적인 안전물품 지원 방식을 개인별 맞춤형 안전물품 구입비 지원으로 확대하고, 직무 특성상 발병 위험이 높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신규로 추가하여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안전물품 구입비 또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장(안 제10조제1항제7호)
- 안전물품 구입비 또는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안 제11조)

3. 검토보고(전문위원 권하나)

가. 개정목적

- 동 조례 개정안은 2025년 8월 14일 마포구청장이 제출하여 8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마포구는 2023.4.20.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동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23.12.28. 조례를 개정하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음.

< 2024년 마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실적 >

구분	계	산재보험료	안전물품	비고
인원(명)	641	303	338	
금액(천원)	39,270	16,608	22,662	

※ 2024년 정부에서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일시 감면 실시(상반기 50%, 하반기 30%)

- 그러나, 기존의 일률적인 안전물품 지원은 노동자의 다양한 근무환경과 개인적 필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안전물품 구입비 지원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직무 특성상 발병 위험이 높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추가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제10조제1항제7호 용어 변경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함.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노동권의 보호 증진 사업)</p> <p>① 구청장은 노동권의 보호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6. (생략)</p> <p>7.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 및 <u>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물품 등 지원</u></p> <p>8.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10조(노동권의 보호 증진 사업)</p> <p>① ----- ----- ----.</p> <p>1. ~ 6. (현행과 같음)</p> <p>7. ----- <u>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u></p> <p>8.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제11조제1항 개정

- 안전물품 지원 방식을 ‘안전물품 또는 안전물품 구입비 지원’으로 명확화함.
- 신규로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을 규정함.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p> <p>① 구청장은 <u>제10조 제1항 제7호</u>에 관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p> <p>1. (생략)</p> <p>2. 재해 예방을 위한 <u>물품 지원</u></p> <p><u><신 설></u></p>	<p>제11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p> <p>① ----- <u>제10조제1항제7호</u>----- ----- -----.</p> <p>1. (현행과 같음)</p> <p>2. ----- <u>안전물품 또는 안전물품을 구입한 비용</u> ---</p> <p>3. <u>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u></p>

○ 제11조제2항 문구 정비 개정

- ‘자로 한정한다’를 ‘사람으로 한다’로 변경하여 한자어를 순화함.

- 지원대상 요건을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 소재 플랫폼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구체화함.

현 행	개 정 안
<p>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u>자로 한정한다</u>.</p> <p>1. 플랫폼 노동자 중 배달 노동자로 <u>마포구에 거주하거나 마포구 관내 플랫폼 업체에 종사하는 자</u></p> <p>2. 마포직업소개소에 <u>구직등록한 자</u></p> <p>③ (생략)</p>	<p>② -----</p> <p>--- <u>사람으로 한다</u>.</p> <p>1. ----- 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구 소재 ----- <u>종사하는 사람</u></p> <p>2. ----- <u>사람</u></p> <p>③ (현행과 같음)</p>

다.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플랫폼 배달노동자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안전물품 구입비 지원 및 심뇌혈관질환 건강검진비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한 것임.
- 광진구¹⁾·인천 계양구 등 타 자치구도 물품 구입비 지원을 운영 중이며, 뇌·심혈관질환 검진비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예산 한계가 있어 지방정부 차원의 보완적 지원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보건복지부와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어 법적 절차상 문제는 없으나, 서울시 및 고용노동부의 유사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다만, 배달노동자를 포함한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근무 특성상 정기 건강검진에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적 제약이 있음. 이에 따라 일부 민간기업에서는 출장검진²⁾을 도입하여 참여 접근성을 높이고 있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마포구 역시 단순한 예산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는 출장검진이나 쉼터 활용 등과 같은 보완책을 병행하여 검진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한겨레, 2024. 5. 22. 보도) 광진구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수료자 안전모, 무릎보호대 지원”

광진구가 배달노동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구입비를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광진구노동복지센터 협업으로 추진됐다. 광진구에서 근무하는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수료자에게 장비구매비를 지급한다. 지원 품목은 안전모, 무릎보호대, 보호장갑 등이 해당된다. 물품구매 후 증빙서류를 청구하면 1인당 1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이륜차 정비비나 수리비는 제외된다.

2) (이데일리, 2024. 5. 27. 보도) 생각대로, 배달대행 최초 라이더 출장 건강검진 실시

배달대행업체 ‘생각대로’는 2024년 5월 21일 (사)퀵서비스협회와 협력하여 전문 의료기관을 ‘이동노동자 쉼터’에 초청, 라이더 약 40여 명이 자유롭게 진찰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바 있음.

정령훈 보건복지부



보 건 복 지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마포구 변경 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 송부

1. 관련근거 : 마포구 협의시스템 접수('25.1.9.)
2. 귀 기관에서 협의요청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사업'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협의완료'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협의된 내용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협의결과 1부.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마포구청장(고용협력과장), 의회사무국장, 서울특별시청(노동정책과장)

행정사무관 이승주 사회보장조정과 전결 2025. 5. 23.
장 이영재

협조자

시행 사회보장조정과-2236 (2025. 5. 26.) 접수 고용협력과-16900 (2025. 5. 26.)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10동 6층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3741 팩스번호 044-202-1976 / aljv00@korea.kr -/ 비공개

[변경] 마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사업
[마포구]

검토결과	협의완료
검토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근거, 협의기준에 따른 검토 결과 ‘협의완료’ - 서울시 등 해당 직종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과 고용노동부의 직종별건강지원 사업 등과 중복지원 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없음